

## 환급금 계좌 [ ]신규 [ ]변경 통보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.

접수일자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호	대표자	
	통관고유부호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담당자 및 연락처	

### [ ] 간이징액환급률표 적용 또는 비적용 승계 여부(제32조제7항)

기존상태 승계 여부	기존 통관고유부호	기존 간이징액환급률표	적용/비적용 최종 승인일자
[ ]승계 [ ]비승계		[ ]적용 [ ]비적용	

### [ ] 신규

지급은행명	지급은행코드
지급 계좌번호	예금주
실명확인번호1 (사업자등록번호)	실명확인번호2 (주민등록번호)

### [ ] 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지급은행명		
지급은행코드		
지급계좌번호		
예금주성명		
실명확인번호1(사업자등록번호)		
실명확인번호2(주민등록번호)		

변경사유 :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 2. 환급금계좌통장 사본(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) 1부.
----------	--

담당	주무	과장
----	----	----

- ※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
- ※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,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개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.
- ※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환급신청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 및 해당 연락처를 기재할 것.